



LEGAL UPDATE

ESG센터

Oct. 2024

EU 산림파괴방지규정(EUDR) 시행 연기 및 이행 지침 발표

- EU 집행위, 1년 연기 제안 및 동 법안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0월 2일, EUDR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 6월 29일 발효된 EUDR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대기업에, 2025년 6월 30일부터 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행 지침과 역외국 위험도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법안 적용이 어렵다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EU 집행위는 동 법안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한편, 법안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국가별 위험평가 방법론을 함께 발표하였으며, 기존의 FAQ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 EUDR 시행 시기 연기 제안
2. 가이드라인 및 국가별 위험평가 방법론 발표
3. FAQ 주요내용
4. 시사점

1. EUDR 시행 시기 연기 제안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0월 2일, 이해관계자들의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EUDR의 시행 시기를 12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각국의 우려 표명과 독일을 비롯한 EU 역내 이해관계자들의 준비도 편차를 고려한 것입니다. 2023년 6월 29일 발효된 본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대기업에 우선 적용되고, 2025년 6월 30일부터 소기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승인 시, 대기업에 대한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본 제안이 EUDR의 본질이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세계 사업자들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가이드라인 및 국가별 위험평가 방법론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EUDR 이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11개부문*으로 분류되며 국가 관할 당국, 집행 기관 및 법원 등에게도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역내시장 출시', '수출의 정의, △운전자 정의, △적용 시기기간, △실사(위험평가, CSDDD와의 상호작용 등), △공급망 복잡성, △적법성 요건, △적용 대상 제품 범위(포장재, 폐기물 등), △실사 체계의 정기 관리, △복합 제품 실사, 정보 요구사항, △위험평가 단계에서 인증 및 제3자 검증 체계 역할, △'농업적 사용'의 정의

또한 EU집행위원회는 국가별 위험도 평가를 위한 벤치마킹 방법론의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역외국의 산림전용 위험도를 분류하는 최종 벤치마킹 결과는 2025년 6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법론에 따르면 전세계 대다수 국가가 '저위험'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나, UN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EU 제재 적용국은 고위험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FAQ 주요내용

(아래 표는 KOTRA EU 경제통상 브리핑 내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p>1. 제품생산지 추적 가능요건</p>	<p>(1.1) EUDR 적용 대상 품목을 EU 내 출시 또는 수출하려는 경우, 운영자는 '제품 생산지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실사 준수서'를 사전에 실사정보시스템(IS)을 통해 제출 필요</p> <p>- 동 의무는 제3국 생산자에 직접 부여되지 않고, EU 내 제품을 출시하는 자가 부여 받음.</p> <p>(1.3) (신규) ① 대량 거래되는 제품(예시: 대두 혹은 팜유) 운영자는 모든 토지를 식별하고,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산림 파괴 또는 황폐화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함</p> <p>② 목재 가구와 같이 여러 목재로 구성된 복합제품의 경우, 운영자는 제조 과정에 사용된 모든 관련 원자재(예: 목재)가 생산된 토지의 지리적 위치를 파악해야 함. 원산지를 알 수 없거나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파괴 또는 황폐화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함</p> <p>③ 초콜릿 바와 같이 여러 관련 상품(예시: 코코아 가루, 코코아 버터, 팜유)을 포함하는 복합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사업자는 EUDR에 따른 주요 상품 및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파생제품에 대해서만 실사를 수행하면 됨</p> <p>(1.21) 제품이 EUDR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당국은 제3국의 행정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3국에서 현장 감사 수행 가능</p>
<p>2. 적용 범위</p>	<p>(2.1) (적용대상) EUDR은 Annex I에 나열된 제품에만 적용, Annex I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관련 상품이 포함되더라도 EUDR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p> <p>(2.5) (포장재) 목재 포장재가 EU 역내 시장에 출시되는 '다른 제품을 지지·보호·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EUDR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다른 제품의 포장재가 아닌 단독 포장재로서 EU 역내 시장 내 출시되는 경우, 규정 적용 대상임</p> <p>(2.7) (신규) (중고 제품) 수명이 다하여 폐기물로 처리될 중고제품은 본 규정의 대상이 아님</p>

구분	주요 내용
3. 의무 적용 대상	(3.7) 역외 위치한 법인 또는 개인이 EUDR 적용대상 제품을 EU 시장으로 출시할 시, EU 역내에 최초로 해당 제품을 출시하는 자를 운영자로 간주함
4. 정의	<p>(4.6) (신규) '산림 파괴 없음'의 요소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과 이후의 산림 유형(원시림 또는 자연 재생림 여부) 확인한 후, 목재 수확과 관련된 임업 활동 및 계획된 수확 후 활동이 산림 황폐화를 유발했는지(유도했는지)를 평가해야 함</p> <p>(4.7) (신규) 수확 작업 자체가 산림 황폐화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산림 파괴가 없는 경우, 20.12.31. 이전과 이후 사이의 산림 상태 변화가 목재 수확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p> <p>또한 나무 벌채의 목적이 산림 보호인 경우(예: 폭풍이나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벌채하거나 해충 및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된 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벌채가 산림 황폐화를 '유발'로 볼 수 없으며, 나무 벌채의 실제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p> <p>(4.14) 고무 재배는 규정상 '농업용'으로 간주됨. 농업 농장은 '산림'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산림을 고무 농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삼림 벌채로 간주됨</p>
5. 실사	(5.1) (저위험국) 저위험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만 상품을 조달하는 운영자는 간소화된 실사 의무를 적용 받게 됨. 관련 제품이 EUDR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정보나 통보를 받지 않는 한,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음.
6. 벤치마킹	<p>(6.1) 벤치마킹 시스템은 해당 국가에서 산림 파괴와 무관하지 않은 상품을 생산할 위험 수준에 따라 고위험, 표준위험, 저위험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함. EUDR 제29조 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가의 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p> <p>(6.5) 역외국별 법률과 정책에 관한 평가는 ①정부 및 제3자(NGO 등)가 제공하는 정보, ②해당 국가와 EU 간 산림전용(황폐화)에 관한 협정, ③산림전용(황폐화) 방지를 위한 국내법 등 존재 여부, ④해당 국가에서의 투명한 데이터 가용성 ⑤UN안전보장이사회 또는 EU 이사회의 제재 여부 등이 반영됨.</p>
7. 법안 이행 지원	<p>(7.3) (등록방법) 운영자와 유통업자는 EUDR 실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EORI 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 번호, 국가 사업자번호, 납세자 식별 번호 등 TRACES에서 지원하는 다른 식별자 등 통해 등록 가능함</p> <p>(7.9) 제33조에 명시된 정보 시스템은 2024년 12월 중순에 출시될 예정이며, 시스템 사용자 등록은 2024년 11월에 시작됨</p>
8. 제재	(10.2) (신규) 회원국은 벌금 수준을 포함한 처벌을 정의할 재량권을 가짐. 법인의 경우, 처벌의 최대 금액은 처벌 결정 직전 회계연도의 운영자 또는 유통업자의 유럽연합 내 총 연간 매출의 4% 미만일 수 없으며, 이는 이사회 규정(EC) No 139/2004 제5조 1항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계산됨.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벌금 수준은 필요에 따라 벌금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음

4. 시사점

EU이사회는 2024년 10월 16일 EUDR의 시행을 1년 연기하자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유럽의회는 11월 13일 경 본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회의 투표가 끝나면 EU이사회도 규정의 공식 채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됩니다. EU 이사회의 목표는 본 연기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EU 관보에 게재되어 올 연말까지 발효되는 것입니다.

EUDR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EU 시장에 원자재나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실사 의무를 준비할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복잡한 공급망을 관리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추적, 산림 파괴와 무관한 제품 생산 증빙, 그리고 실사 체계 구축 등을 보다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UDR의 입법 절차와 통과 시점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 및 FAQ의 주요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T. (+82) 2 6182 8502

센터장/미국변호사

E. synn@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유현상

T. (+82) 2 6182 8716

변호사

E. hsryu@yoonyang.com

김정남

T. (+82) 2 6003 8559

수석전문위원

E. jnkim@yoonyang.com

양희

T. (+82) 2 6003 7674

시니어매니저

E. hyang@yoonyang.com